

도로교통법 개정 (2026.4.2. 시행)

약물?

운전?



약물운전 금지

약물운전 측정, 처벌강화
함께 알아보아요!!

Q. 어떤 약이든 복용 후 운전하면 처벌되나요?

A. NO!!!

약물은 **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환각물질**을 의미합니다.

*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,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

Q. 마약·대마·환각물질은 아닌데, 향정신성의약품은 뭔가요?

A. 졸피뎀·옥시코톤·디아제팜 등 481종이 법률 상 지정되어 있고, 불안제·신경안정제·수면제·진통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Q. 복용하는 약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. 약 처방·구입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꼭!!! **전문가(의사, 약사)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고**
약 봉투·용기 "**졸음유발**" "**운전주의·금지**" 문구를 확인하세요.

약물 복용 시 운전대는 잠시 놓아주세요



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

약물운전이란?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(개인형이동장치 제외)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

*도로교통법 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

❗ 처벌 강화

- 약물운전 및 측정거부 : 징역 5년 ↓, 벌금 2,000만원 ↓
- 상습약물운전 : 징역 2~6년, 벌금 1,000~3,000만원
- 상습측정거부 : 징역 1~6년, 벌금 500~3,000만원

+ 운전면허 취소

꼭! 기억하세요

1



약 처방·구입 시
의사·약사에게
운전해도 되는지 확인

2



처방전, 약 봉투·용기
'졸음유발' '운전·주의'
문구 확인

3



졸음유발 약 등
약물 복용 시
운전 금지

